

#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한상공회의소



## 들어가면서...

---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는 물론 우리사회와 기업경영 전반에 선진화된 관행을 정착 시키는 전기가 될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전반의 관행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기업현장에서 도 당분간의 혼선과 불편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기업애로를 줄이고자 그간의 상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아직 법 내용에 대한 세세한 해석이 부족하고 판례가 없는 관계로 각 사안별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급적 다양한 사례를 많이 담아 기업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집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CONTENTS

I. 적용 대상	7
◎ 법령 내용	8
◎ 주요 상담사례	11
1.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1
2.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13
3. 사보를 발간하는 등의 경우	15
4. 기업 임원과 공직자의 이중지위	17
5. 인적·장소적 적용범위	18
II. 부정청탁의 금지	21
◎ 법령 내용	22
◎ 주요 상담사례	24
1. 부정청탁인지 여부 판단	24
2. 부정청탁의 전달행위	26
3. 공개적인 청탁	27
4. 공익목적의 민원전달	28
5. 공직자외의 자에 대한 청탁	29
6. 기타 사례	31
III. 금품등 제공 금지	33
◎ 법령 내용	34
◎ 주요 상담사례	37
1. 금품제공인지 여부 판단	37
2. 금품등의 가액산정	40

3.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41
4. 행사 개최 등 마케팅 활동	48
5. 경영자문 및 이사회 운영 등	51
6. 사내교육 및 강연 등	54
7. 사회상규의 범위	57
<b>IV. 신고 및 처벌</b>	59
◎ 법령 내용	60
◎ 주요 상담사례	62
1. 법 위반에 대한 신고	62
2. 법 위반에 대한 처벌	64
3. 양벌규정의 적용	66
4. 처벌 등에 대한 불복	68
5. 공소시효 등	69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71
▣ 색인표	109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 I. 적용 대상

◎ 법령 내용

◎ 주요 상담사례

1.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보를 발간하는 등의 경우
4. 기업 임원과 공직자의 이중지위
5. 인적·장소적 적용범위

Q&A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sup>1)</sup>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sup>2)</sup>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sup>3)</sup>

### 1) 거래 상대방이 공직유관단체인지 여부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한 단체만 해당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에서 확인 가능

### 2) 거래 상대방이 공공기관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만 해당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www.alio.go.kr](http://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 3) '회사' 또는 '社報를 발행하는 회사'가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인지 여부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는 모두 해당
  -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신문사업자 : 일반·특수 일간신문사업자 및 일반·특수 주간신문사업자
  - 정기간행물사업자 :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자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은 제외)
  -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
- 방송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www.kcc.go.kr](http://www.kcc.go.kr))에서 확인 가능
- 신문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http://www.mcst.go.kr))에서 확인 가능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및 그밖에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sup>1)</sup>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sup>2)</sup>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sup>3)</sup>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sup>4)</sup>**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품목등을 제공한 자**

1) 공무원 등의 경우 임직원의 적용범위

- 행정기관에 근무해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대상 아님(예: 기간제 근로자)
-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대상(예: 공중보건의, 청원경찰 등)
- 공무원 신분인 경우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

2)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직원의 적용범위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에는 비상임 임원을 포함
- 근로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자를 포함
- 행정 지원, 단순 노무 등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

3) 언론사의 경우 임직원의 적용범위

-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 행정업무 등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
- 사보 발행기업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해당

4)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만 법규정을 적용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sup>1)</sup>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
  -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외국인에게 적용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sup>2)</sup>에 대해서도 적용

### 1)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

-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대상

###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내국인 공직자도 처벌 대상

### ※ 공무원의 경우 국내법에 따른 공무원만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

- 주한 외국대사관의 직원 : 해당하지 않음
- 재외 한국대사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 해당함
- 외국법에 따른 외국 공무원 : 해당하지 않음

### Q1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A** 모회사가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 · 고시한 기관에 한하며, 당해 자회사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회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당해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 위탁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2 은행등 금융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지?

**A**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일부 금융기관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Q3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지?

**A** 행정기관의 경우와 그 외 기관의 경우에 따라 구분됩니다.

행정기관 계약직 직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직원은 당해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Q4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비상근임원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인지?**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상근·비상근 여부나, 보수를 지급받는지 등에 관계없이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5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근 명예직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상근·비상근 여부나, 보수를 지급받는지 등에 관계없이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6** 정부 위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공무수행사인 인지?

**A**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시·훈령 등도 포함됩니다.

**Q7**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인지?

**A** 법령에 근거없이 단순히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A**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당해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동법을 적용(정확히는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수탁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적 수탁업무 종사자를 적용대상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Q9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A**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누리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Q10 대표이사가 정부 위원회에 참여중인데 공무수행사인인지 확인 방법은?

**A** 해당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원회란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등록되지 않은 사보를 발간해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A**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사보를 발간하는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Q12** 제3자에게 사보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A** 사보를 사내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잡지나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등록·신고되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 발행자에 한하므로, 당해 사보가 정기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사보를 발행해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은?

**A** 권익위원회에서는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의 전체 임직원이 아닌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정 해석하고 있습니다.

## Q14 방송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대상은?

**A** 방송사업자의 대표와 임직원 모두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사보를 발간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와 달리 '방송사업을 영위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당해 기업 전체 임직원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에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업무 종사자만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방송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도 당해업무 종사자로만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Q15** 기업 임원이 공공기관 비상근 임원을 겸할 경우 직무관련성 적용범위는?

**A** 비상근 임원 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 및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동 금액 이하의 수수 역시 금지됩니다.

**Q16** 기업 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적용 범위는?

**A** “공무수행에 관련”된 경우 예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더라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수행과 전혀 관련없이 사인의 지위로 서 수수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17**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또는 외투법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인지?

**A**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적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자가 국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18**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국내법인의 외국인 직원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A**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청탁 금지법상 금지된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당해 외국인 직원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9** 외국대학 소속 한국인 교수를 초빙한 강연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A**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해 교수가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학교 교수의 신분이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Q20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등의 청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A**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등이 아니며, 대사관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사관 직원 등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21 현지 공무원에 대한 내국인의 식사제공 또는 부정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A** 현지 공무원의 경우 국내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22 국내법인 해외지사의 지사장이 현지 상무관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A**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도 지사장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상무관이 국내법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식사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3 해외지사의 외국인 직원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한 청탁이 문제가 되는지?

**A** 해외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인인 상사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당해 상사가 행위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24 현지 근무중인 코트라(KOTRA)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인지?

**A** 코트라는 인사혁신처가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코트라 직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코트트라가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의 해외에서 위반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Ⅱ. 부정청탁의 금지

- 법령 내용
- 주요 상담사례
  1. 부정청탁인지 여부 판단
  2. 부정청탁의 전달행위
  3. 공개적인 청탁
  4. 공익목적의 민원전달
  5. 공직자외의 자에 대한 청탁
  6. 기타 사례

Q & A



누구든지<sup>1)</sup>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sup>2)</sup>에게 다음의 14 가지 유형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토록 하는 행위 금지

- 인가·허가·면허·심사·인증 등을 처리토록 하는 행위
- 행정처분·형벌부과 등을 감경·면제토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특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탈락토록 하는 행위
- 보조금·출연금·장려금 등을 특정인에게 배정·지원·투자·출자토록 개입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을 매각·점유 등 하도록 하는 행위<sup>3)</sup>
- 학교 입학·성적 등에 관하여 처리·조작토록 하는 행위
-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관련 업무를 처리케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판정 업무를 조작하는 행위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등의 결과를 조작·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결정·중재·화해 등을 처리토록 하는 행위

1) 부정청탁 행위의 주체는 전 국민(누구든지)

- 법인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2) 부정청탁 행위의 상대방은 위 14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직무담당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국장,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외, 이 경우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는 해당

3)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 금지

※ 금품수수와 결부되었는지 여부나 청탁의 내용이 실현 되었는지 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가 금지대상

※ 직접 본인을 위한 부정청탁도 금지대상이지만 제재는 하지 않음  
- 종업원이 회사를 위한 청탁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제재 대상임



- 각종 법령·기준(공공기관 내규 포함)에 따라 권리침해 구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sup>1)</sup>으로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sup>2)</sup>이 공익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질의·상담 형식을 통한 법령·제도 등의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사회상규<sup>3)</sup>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공개적'이란?

-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예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등

2) '시민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는?

-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 예 :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각종 협·단체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
- 단체요건에 해당되어도 소속직원을 통해 사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

3) '사회상규'란?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 청탁 동기·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Q25**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한 14가지 직무 외에는 청탁을 해도 되는지?

**A**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한 14가지 청탁만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Q26**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A** 직무수행 담당자는 물론 그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즉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물론, 과장·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와 결재선상에 있지 않으나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까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전달한 경우 해당 공직자들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Q27** 회사를 위한 청탁도 '자기를 위한 청탁'으로 봐 제재하지 않는지?

**A** 임직원이 소속 회사의 직무에 대해 청탁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청탁입니다.  
 '자신을 위한 청탁'이란 청탁으로 인한 이익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를 위한 청탁의 경우 이익이 종국적으로 회사에 귀속하는 만큼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되어 제재대상이 됩니다.



## Q28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A**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29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처리해 달라는 청탁도 문제가 되는지?

**A** 문제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을 위반해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을 하는 자와 공직자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실제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가 이루어졌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큼니다.

## Q30 '서둘러 허가해 달라!'와 같은 청탁도 문제가 되는지?

**A** 문제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와 같은 청탁이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따라 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를 법정기한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나, 진행상황·조치결과를 문의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1** 부정청탁을 했지만 공직자등이 들어 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지?

**A**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의 실행여부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청탁의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됩니다.

**Q32** 청탁후 부정청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즉시 철회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A** 청탁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부정청탁 행위를 한 시점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이유로 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청탁 이후 즉시 철회하였다는 점은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부정청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청탁을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Q33**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인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요청했다가 철회하여 청탁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지?

**A** 부정청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공직자등'을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권익위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Q34** 협회·단체 주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의 건의·질의는 문제없는지?

**A**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청탁행위를 제외한 일반적인 질의나 건의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상기 14가지 행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건의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경제단체 주관행사가 참석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하고있고 언론취재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개적 요구’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35** 공문을 통해 청탁하는 것도 공개적인 청탁에 해당하는지?

**A** ‘공개적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요구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으로써 청탁자와 공직자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인 만큼, 공문의 경우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문으로 지정된 민원실을 통하거나 청원의 형태로 청탁하는 경우에는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요구’에 해당되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36** 공익목적의 민원(청탁)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A**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고, 이에는 각종 협회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Q37** ‘공익 목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공익 목적’에는 국가나 사회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38**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도 공익목적의 민원전달 부탁이 가능한지?

**A** 국회의원 보좌관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전달의 주체는 아니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해당 민원을 직무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받은 민원을 당해 국회의원이 전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탁 금지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Q39** 협회·단체 등을 통한 공익목적의 민원전달은 언제나 가능한지?

**A** 협회·단체 소속 직원을 통한 사적인 전달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협회·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해당 협회·단체가 공식적인 민원전달 절차를 준수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0**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지?

**A** 원칙적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정정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내용,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있을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수증죄 등 별도의 범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Q41**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에 대한 청탁도 규제대상인지?

**A** 정당의 당직자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당해 정당에 관한 업무가 아닌 특정 공무원의 직무(선출직 국가공무원 인국회의원의 직무도 포함됨)에 관한 간접적인 청탁인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2** 공기업 직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A** 법령에 위반하여 승진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부탁할 때, 그 부탁이 관계 법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뤄졌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본인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Q43 민간기업에 대한 청탁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A**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민간기업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Q44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게 하는 청탁도 부정청탁인지?

**A**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다만 청탁으로 인해 해당 공직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취업 제공 등)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 이외에도 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형법상 공갈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45 제3자인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A**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민간기업의 업무가 제3자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공직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 혹은 강요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6**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국정감사법을 위반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잘 아는 다른 임직원으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잘못된 증인 채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7** 인·허가가 지연되어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인지?

**A**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48** 부과된 가산세나 과태료를 감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인지?

**A** 법령에 위반하여 감경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산세 경정청구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 Ⅲ. 금품등 제공 금지

- 법령 내용
- 주요 상담사례
  1. 금품제공인지 여부 판단
  2. 금품등의 가액산정
  3.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제공
  4. 행사 개최 등 마케팅 활동
  5. 경영자문 및 이사회 운영 등
  6. 사내교육 및 강연 등
  7. 사회상규의 범위

Q & A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sup>1)</sup>으로부터 1회<sup>2)</sup>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sup>3)</sup>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백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하여<sup>4)</sup>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 1) '동일인'인지 여부 판단 기준

- 금품의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외형상 금품 제공자가 달라도 출처가 같다면 동일인으로 판단 가능

### 2) '1회'에 대한 판단 기준

- 자연적 의미가 아닌 법적인 의미에서의 행위 수로 판단
-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 있으면 1회로 평가

### 3) '금품등'의 범위

-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기타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입장권, 할인권, 관람권, 부동산등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 기준액은 시가와 큰 차이 없으면 실제 비용으로 하되, 차이가 크거나 실제비용을 알 수 없으면 시가를 적용

### 4) '직무관련성'이란?

- 공무원이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원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
  - 관련 대법원 판례(요약)

▷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법령상 관장직무 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



-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 및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가액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sup>1)</sup>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sup>2)</sup>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동창회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sup>3)</sup>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홍보용품·경품
- 다른 법령·기준이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1) 음식물등의 허용가액 범위

구분	상세 내용	가액 범위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선물	금전 및 상기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유가증권 등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부조금을 대신하는 조화·화환 등	10만원

- 가액 범위는 각각의 상세 내용에 열거된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  
이 경우 가액범위는 그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도 초과금지

2) 권원의 존재 여부는 물론 권원의 정당성까지 충족해야 예외로 허용

- 예: 자문계약에 따라 교수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제공하는 자문에 비해 과도하다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소지
- 강연료의 경우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도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가액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됨

3)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공식적인 행사인지 판단 기준

- 공식적인 행사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회사등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 통상적 범위란 유사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
- 일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참석자의 역할별 일부 차등은 가능



가. 공무원

구 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강의는 1시간, 기고는 1건 기준
- 1시간 초과시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초과 못함
- 원고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와 관련해 제공하는 일체의 금액 포함
- 소속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은 실비 수준에서 별도 제공가능

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구 분	기관장	임 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강의는 1시간, 기고는 1건 기준
- 1시간 초과시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초과 못함
- 원고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와 관련해 제공하는 일체의 금액 포함
- 소속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은 실비 수준에서 별도 제공가능

다. 교직원 및 언론인

- 1시간당 100만원(초과시간에 대한 제한없음), 기고는 1건당 100만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에도 해당할 경우<sup>1)</sup> 그 기준을 적용

1) 교직원·언론인이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강의료 기준

-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에 해당 → 공무원 기준 적용
  - 총장 : 장관급 이상(일부 학교는 차관급)
  - 부교수 이상 : 4급 이상      • 조교수 이하 : 5급 이하
-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 공직유관단체 기준 적용
  - 총장 : 기관장      • 학교법인 임원 : 임원      • 교수 : 그 외 직원

**Q49**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란 무엇인지?

**A** 재산적 이익과 편의 제공, 기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재산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편의 제공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기타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Q50**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친구에게 사적으로 금품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는지?

**A** 공무원인 친구와의 사적 금품제공이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구일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허용됩니다.

**Q51**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친구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문제가 되는지?

**A** 제공 금품의 금액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금지됩니다.

## Q52 직원이 개인비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A** 금전의 출처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53 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인지?

**A** 원칙적으로 도서구입은 사적 거래의 성격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거나 도서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 등은 금품제공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54 공직자에게 회의실·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수수금지 대상 금품으로 '부동산 등의 사용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회의실이나 체육시설을 무상 대여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게 무상대여해 줌으로써 특정 공무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도 특정한 이익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Q55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정당한 채용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등의 직무가 회사와 관련되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제공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방편에 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6**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경우의 금품가액은?

**A** 외부에 판매하는 가격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전용식당으로 외부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57** 자사 생산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의 금품 가액은?

**A**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가 가액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시제품으로서 시장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상 판매가격이나, 아니면 생산원가 등을 고려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58** 그린피가 2만원인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토록 배려한 경우 금품가액은?

**A** 회원이 아니었다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기준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원이 아니었다면 당해 골프장에 지불해야 할 그린피(시가)가 20만원 이었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품의 가액은 시가에서 당사자가 실제 지불한 2만원을 공제한 18만원이 될 것입니다.

**Q59** 공항 면세점을 통해 구입한 금품을 선물한 경우 기준가액은?

**A** 실제 구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영수증 등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면세가격이 아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할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Q60**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허용가액 기준만 지키면 언제든 괜찮은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제공가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본 취지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 · 허가 신청자가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물 등 제공자와 업무 담당 공직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의 가액이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61**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권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A** 식사권은 선물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식사권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동 시행령에서 선물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선물로 볼 수 있습니다.

**Q62** 설 · 추석때 제공하는 과일선물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A** 선물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식사권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동 시행령에서 선물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물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 Q63 공공기관 방문시 가지고 가는 음료등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A** 공직자등과 함께 하는 음료인지 여부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음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방문시에 가지고 가는 음료 등을 실제로 공직자등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에 해당하지만, 음료를 함께 하지 않고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에서 '선물'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물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 Q64 저녁식사후 별도로 제공하는 택시비도 음식물에 포함되는지?

**A** 택시비의 경우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식사대접 행위가 택시비 제공행위와 함께 1회로 평가되면서 음식물 가액과 함께 수수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비의 제공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택시비 금액이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65 출입기자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기준 이하의 식사는 문제가 없는지?

**A** 원칙적으로 기준 이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회 제공 금액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제공 횟수가 과도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66 공공기관의 회식에 참석해 기준이하 식사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A**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식사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부서장 등 회식을 주관한 1인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67 식사자리에 뒤늦게 참석해 계산만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

**A** 청탁금지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공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식사 제공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음식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뒤늦게 참석해 식사를 함께 하지 않고 식사 비용만 지급한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는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Q68 기자에게 기사 게시를 요청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3만원 이하의 식사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Q69 입찰 담당 공무원과 함께한 커피(1만원 상당)가 문제가 되는지?

**A** 권익위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커피는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가볍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여겨지는 경향도 있는 만큼 사회상규로서 허용될 여지도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70 인·허가 업무완료 후 담당공무원에 식사제공(2만원 상당)이 문제가 되는지?

**A** 권익위는 인·허가 업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완료 이후인 만큼 의례적인 감사의 의미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Q71 공무원과 2회 식사를 하며 식사전액 7만원을 번갈아 결제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상호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고 접대가액에 따른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경우는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금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처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 9조 2항 위반)

## Q72 4만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문제되는지?

**A** 청탁금지법상 허용가액의 범위를 초과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가액의 범위는 음식물과 선물 가액을 합산해 5만원까지입니다. 아울러 음식물과 선물 각각의 허용가액(3만원, 5만원)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 제공금액의 허용가액을 초과해 청탁금지법상 제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Q73 공직자와 함께 하는 골프(스크린 골프 포함)도 선물인지?

**A** 골프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선물을 '금전, 물품,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골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체의 제공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Q74 정부기관 체육행사에 수건·우산 등을 협찬해도 문제가 없는지?

A 문제가 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권익위는 '정당한 권원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또 다른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내부행사에 협찬하는 행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75 회사 로고가 들어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A 사안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인정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로고뿐만 아니라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배포 물품이 특정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가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등에는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Q76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기준금액 이하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A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해 회사를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관계에서 선물의 제공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Q77 **공직자의 아들 돌잔치에 10만원을 부조했다면 문제가 되는지?**

**A**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권익위원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경조사의 범위를 결혼(본인, 직계비속)과 장례(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직접 제공은 제재대상이며,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물 제공 기준(5만원)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Q78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승진 축하 난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되는지?**

**A** 승진 또한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권익위원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축하 난 전달은 선물 제공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 가액범위인 5만 원을 초과해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 Q79 **1회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회 제공하는 식사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수가 금지되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의 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회 제공 금액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제공 횟수가 과도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80**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A** 권익위원회는 주최자와 참석자, 행사의 목적과 내용,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ii)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iii)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iv)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Q81**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란 무엇인지?

**A** 권익위원회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특정 금품의 제공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사개최가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82** 공공기관의 특정부서와 회사의 관련부서간의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행사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A** 제재대상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친선 체육대회가 법 제8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관계기관 특정부서 직원 전원에 대한 행사비용 전액을 행사담당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품제공 금지



### Q83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식사 제공에는 금액제한이 없는지?

**A** 원칙적으로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도록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식사제공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Q84 정례 기자간담회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A** 참석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고, 행사 내용이 기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며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등이라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Q85 공식 행사에서 기자에게 제공하는 항공료 등을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지?

**A** 통상적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통상적인 범위에 대하여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특정 금품등의 제공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사 개최가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으며, 항공료 등의 지원의 경우 고가인 점에 비추어 해외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86 '공무원 할인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A**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는것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공공단체에 한해 할인 혜택이 제공 되는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동등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 Q87 공식행사에서 선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공식행사에서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만이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공하는 물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거나, 동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Q88** 자문계약에 따라 대학교수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A**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즉 ‘자문 계약’이라는 권원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가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수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비해 지급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준의 자문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Q89** 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제재대상인지?

**A**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심사, 평가 등을 수행하고 받은 수당 등도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계약 양태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판단될 소지도 있으니 사례 발생시 별도 문의를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Q90** 사외이사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문제가 없는지?

**A**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는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이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다른 사외이사나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의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권원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Q91 사외이사인 교수에게 이사회 참여시 지급하는 수당은 제재 대상인지?

**A**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급여외 금품등이 교수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수수한 것이라면, 1회 100만원(연 300백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참석한 댓가로서 그 금액이 업계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하지 않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92 이사회(사외이사 교수 포함) 개최후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는 문제가 없는지?

**A** 가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 참여한 사외이사에게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그 가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Q93 사외이사인 교수에게 제공하는 휴양시설이용비 등은 문제가 없는지?

**A**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외이사인 교수가 지급받는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에 대해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교수가 사외이사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휴양시설이용비가 사규에 의해 이사에게 일괄 제공되는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여지도 일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94 사외이사인 교수와 사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교수가 사외이사로서 제공받는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1회 100만원 이하의 식사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교수의 직무가 전공분야에 대한 강연·자문 등으로 본다면 식사자리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의견제시(자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사외이사인 교수와의 사적인 식사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Q95 사외이사인 교수의 요청으로 특정 학회에 협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A**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 개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회 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회 등에 제공된 협찬이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외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96 학교가 아닌 특정교수에게 제공하는 기술개발 지원금은 문제가 되는지?

**A**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입니다.

기술개발 지원금을 공직자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97** 연수원에서 계약을 통해 연간 강연을 진행해도 강연료 기준을 적용받는지?

**A** 각각의 강연에 대해 강연료 기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전체 연간 강연을 1회의 강의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 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 강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계약을 통해 강연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강의는 시간적으로 볼 때 별개의 강의라고 판단되므로 각각의 강의에 대해 강연료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Q98** 장관이 1시간 20분을 강연했을 때 강연료는 얼마까지 지급가능한지?

**A** 최대 75만원까지 지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5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연 초과시간이 길지 않다면 강연료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99** 기업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강연료 제한을 받는지?

**A**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강연료 제한은 없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금지 규정과 금품 수수금지 규정(제5조~제9조)을 준용하고 있지만,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한 수수제한 규정(제10조)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제 90조 금지

## Q100 강연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A** 원칙적으로 강연료 상한액을 초과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기준에 해당되어 공직자인 강연자를 위하여 별도 식사자리를 마련한다면 제8조에 따라 3만원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101 강연료도 연간 300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A**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강연에 해당되어 강연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강연료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Q102 강연료 지급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A** 원고료도 강연료에 합산하여 상한액 규정을 적용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강연료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료를 합산한 금액이 강연료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Q103 강연료를 학교에 지급할 경우 상한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지?

**A**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품등 수수의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은 자연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연료를 학교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연료를 학교에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해당 공직자들에게 귀속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Q104 교육과정 개발 용역비와 강연료를 각각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A**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강연료에 포함하고 있는 원고료나 출연료가 아닌 별도의 용역이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공직자등이 별도의 계약에 기해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용역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로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105** 기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A** 운영 규모에 따라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 제공을 하는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 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입니다.

**Q106** 주차권 제공(2만원 상당)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A** 이에 대한 권익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1~2시간(5천원 내외) 수준이 아닌 종일주차권(2만원 상당)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는 과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107** 당구, 스크린 골프(2만원 상당)은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

**A** 식사를 대신하여 가벼운 사교목적으로 진행된 당구, 스크린 골프 등의 게임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당구·볼링등의 게임비를 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을 때 스크린 골프는 사회상규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예제 제107면지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 IV. 신고 및 처벌

- ◎ 법령 내용
- ◎ 주요 상담사례
  1. 법 위반에 대한 신고
  2. 법 위반에 대한 처벌
  3. 양벌규정의 적용
  4. 처벌 등에 대한 불복
  5. 공소시효 등


Q & A



- 신고주체 : 누구든지
- 신고처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와 증거를 함께 제출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신분보호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
- ※ 공직자등의 신고 의무<sup>1)</sup>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 : 최초 거절의사 표시 →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자신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1) 공무수행사인에게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신고의무 부여

- 이 경우 신고처인 '소속기관장'은 본래 소속이 아닌 아래와 같음
  -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 :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한 공공기관장
  - 공공부문으로 파견된 자 :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 해당 공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



유형	위반 행위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제공 금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제공한 자		제재 없음

※ 양벌 규정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도 제재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는 면책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대법원 유사 판례)
    - : 해당 법률 및 양벌조항 마련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의 침해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

**Q108**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A**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한 공공기관의 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사인도 당해 규정을 준용하여 권한을 위임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109** 기업도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는지?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청탁방지 담당관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청탁방지 담당관을 별도로 두거나, 청탁방지 담당업무를 겸할 자를 지정하는 것도 관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110** 사보를 발간해 언론사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하는지?

**A** 원칙적으로는 언론사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과 동일하게 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대표자는 i)청탁방지 담당관 지정과 ii)임직원의 교육 및 서약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iii)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징계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사보를 발행하는 경우 담당 부서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서약서 제출이나 징계 대상은 담당부서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고 및 처벌

## Q111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일반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향후 처벌시 양벌규정 면책 등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신고 이후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나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Q112** 벌금·과태료 산정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A** 제공받은 금품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의 상한액 기준을 초과해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기준금액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제공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Q113** 상대방이 직무관련 공무원임을 모르고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처벌대상인지?

**A**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14** 금품제공과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은?

**A** 각각의 규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은 별개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각각이 보호하는 법익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중첩적으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Q115**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을 함께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A**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그 형이 중한 뇌물죄가 성립하고 뇌물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은 '형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처벌



## Q116 회사 내부결재를 통해 제공한 선물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은?

**A** 원칙적으로는 관여자 전부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제공한 담당자 뿐 아니라 선물제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선물 제공을 결정한 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Q117 교수들에게 지급한 강연료가 기준에 위반된 경우 처벌은?

**A**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 자등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118** 기업 임원으로서 공무수행사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양벌규정 대상 기관은?

**A**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을 위반한 경우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품 등을 수수해 법을 위반한 경우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품 등을 제공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직자등에 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19** 임직원 상호연락없이 각각 10만원씩 부조금을 낸 경우, 직원과 법인의 처벌은?

**A** **· 개인비용으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각각 '개인 비용' 으로 제공한 경우, 금품등의 출처가 서로 다르고 직접 제공행위자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임직원, 회사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비용으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자금' 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는 동일인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직원 개인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10만원씩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조사 비용의 지급을 승인한 자를 행위자로 보아 처벌하고 동시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120** CEO가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면책가능성은?

**A**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위법행위는 '법인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양벌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및 처벌

## Q121 양벌규정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인은 어느 수준의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는지?

**A** 청탁금지법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서는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 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사규 및 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일상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122** 직원이 처벌 또는 과태료에 불복할 경우 불복 절차는?

**A**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기소가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불복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위반의 경우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결정)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과태료 재판의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123** 기업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불복 절차는?

**A** 개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처벌

**Q124**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별도의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은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는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모두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125** 9월 28일이 시행일인데 금년도 회계연도 적용 기준은?

**A**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연도 (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법 시행일이 '16. 9. 28.부터이므로 이때부터 2016년도 회계 연도 마감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정부의 경우 '16. 9. 28.-'16. 12. 31.).

**Q126** 올해의 경우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올해 회계연도 (정부의 경우 '16. 9. 28.-'16. 12. 31.)도 '300 만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1년에 미달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일할 계산해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및 처벌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시행일 : 2016.11.30.] 제5조

####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

청탁 금지법 및 시행령

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신고의 처리)

-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부당이익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제5장 징계 및 벌칙

###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3278호, 2015. 3.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14조(종결처리 등)

-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

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들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① 공직자들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① 공직자들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



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



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소속기관장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2조(교육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부칙 <제27490호, 2016. 9. 8>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 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 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인 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 ■ 색인표



Q1.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 11

Q2. 은행등 금융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지? ..... 11

Q3.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지? ..... 11

Q4.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비상근임원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인지? ..... 12

Q5.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근 명예직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 12

Q6. 정부 위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공무수행사인인지? ..... 13

Q7.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인지? ..... 13

Q8.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13

Q9.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 14

Q10. 대표이사가 정부 위원회에 참여중인데 공무수행사인인지 확인 방법은? ..... 14

Q11. 등록되지 않은 사보를 발간해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 15

Q12. 제3자에게 사보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 15

Q13. 사보를 발행해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적용대상은? ..... 15

Q14. 방송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대상은? ..... 16

Q15. 기업 임원이 공공기관 비상근 임원을 겸할 경우 직무관련성 적용범위는? ..... 17

Q16. 기업 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적용범위는? ..... 17

Q17.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또는 외투법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18

Q18.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국내법인의 외국인 직원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 18

Q19. 외국대학 소속 한국인 교수를 초빙한 강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18

Q20.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등의 청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 19

Q21. 현지 공무원에 대한 내국인의 식사제공 또는 부정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 19

Q22. 국내법인 해외지사의 지사장 현지 상무관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 19

Q23. 해외지사 외국인 직원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한 청탁이 문제가 되는지? ..... 20

Q24. 현지 근무중인 코트라(KOTRA)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지? ..... 20

Q25.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한 14가지 직무 외에는 청탁을 해도 되는지? ..... 24

Q26.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24

Q27. 회사를 위한 청탁도 '자기를 위한 청탁'으로 봐 제재하지 않는지? ..... 24

Q28.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 25

Q29.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라는 전제로 청탁을 해도 문제가 되는지? .....	25
Q30. '서둘러 허가해 달라!'와 같은 포괄적인 청탁도 문제가 되는지? .....	25
Q31. 부정청탁을 했지만 공직자들이 들어 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지? .....	26
Q32. 청탁후 부정청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즉시 철회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	26
Q33.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인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요청했다가 철회하여 청탁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지? .....	26
Q34. 협회·단체 주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의 건의·질의는 문제없는지? .....	27
Q35. 공문을 통해 청탁하는 것도 공개적인 청탁에 해당하는지? .....	27
Q36. 공익목적의 민원(청탁)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	28
Q37. '공익 목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28
Q38.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도 공익목적의 민원전달 부탁이 가능한지? .....	28
Q39. 협회·단체 등을 통한 공익목적의 민원전달은 언제나 가능한지? .....	28
Q40.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지? .....	29
Q41.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에 대한 청탁도 규제대상인지? .....	29
Q42. 공기업 직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	29
Q43. 민간기업에 대한 청탁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30
Q44.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게 하는 청탁도 부정청탁인지? .....	30
Q45. 제3자인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기업에 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	30
Q46.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	31
Q47. 인·허가가 지연되어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인지? .....	31
Q48. 부과된 가산세나 과태료를 감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인지? .....	31
Q49.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란 무엇인지? .....	37
Q50.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친구와 사적으로 금품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는지? .....	37
Q51.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친구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문제가 되는지? .....	37
Q52. 직원이 개인비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	38
Q53. 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금품제공인지? .....	38
Q54. 공직자에게 회의실·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38
Q55.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39
Q56.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경우의 금품가액은? .....	40

Q57. 자사 생산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의 금품 가액은? .....	40
Q58. 그린피가 2만원인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토록 배려한 경우 금품가액은? .....	40
Q59. 공방 면세점을 통해 구입한 금품을 선물한 경우 기준가액은? .....	40
Q60.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기준만 지키면 언제든 괜찮은지? .....	41
Q61.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권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	41
Q62. 설·추석때 제공하는 과일선물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	41
Q63. 공공기관 방문시 가지고 가는 음료등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	42
Q64. 저녁식사후 별도로 제공하는 택시비도 음식물에 포함되는지? .....	42
Q65. 출입기자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기준 이하의 식사는 문제가 없는지? .....	42
Q66. 공공기관의 회식에 참석해 기준이하 식사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	43
Q67. 식사자리에 뒤늦게 참석해 계산만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 .....	43
Q68. 기자에게 기사 기사를 요청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43
Q69. 입찰 담당 공무원과 함께한 커피(1만원 상당)가 문제가 되는지?.....	44
Q70. 인·허가 업무완료 후 담당공무원에 식사제공(2만원 상당)이 문제가 되는지?.....	44
Q71. 공무원과 2회 식사를 하며 식사전액 7만원을 번갈아 결제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	44
Q72. 4만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문제되는지? .....	45
Q73. 공직자와 함께 하는 골프(스크린 골프 포함)도 선물인지? .....	45
Q74. 정부기관 체육행사에 수건·우산 등을 협찬해도 문제가 없는지? .....	46
Q75. 회사 로고가 들어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46
Q76.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기준금액 이하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	46
Q77. 공직자의 아들 돌잔치에 10만원을 부조했다면 문제가 되는지? .....	47
Q78.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승진 축하 난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되는지? .....	47
Q79. 1회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47
Q80.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	48
Q81.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란 무엇인지?.....	48
Q82. 공공기관의 특정부서와 회사의 관련부서간의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행사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	48
Q83.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식사 제공에는 금액제한이 없는지? .....	49



Q84. 정례 기자간담회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	49
Q85. 공식 행사에서 기자에게 제공하는 항공료 등을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지? .....	49
Q86. '공무원 할인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	50
Q87. 공식행사에서 선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	50
Q88. 자문계약에 따라 대학교수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	51
Q89. 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제재대상인지? .....	51
Q90. 사외이사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문제가 없는지? .....	51
Q91. 사외이사인 공직자에게 이사회 참여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제재대상인지? .....	52
Q92. 이사회(사외이사 교수 포함) 개최후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는 문제가 없는지? .....	52
Q93. 사외이사인 교수에게 제공하는 휴양시설이용비 등은 문제가 없는지? .....	52
Q94. 사외이사인 교수와 사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53
Q95. 사외이사인 교수의 요청으로 특정 학회에 협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53
Q96. 학교가 아닌 특정교수에게 제공하는 기술개발 지원금은 문제가 되는지? .....	53
Q97. 연수원에서 계약을 통해 연간 강연을 진행해도 강연료 기준을 적용받는지? .....	54
Q98. 장관이 1시간 20분을 강연했을 때 강연료는 얼마까지 지급가능한지? .....	54
Q99. 기업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강연료 제한을 받는지? .....	54
Q100. 강연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	55
Q101. 강연료도 연간 300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	55
Q102. 강연료 지급시 원교료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	55
Q103. 강연료를 학교에 지급할 경우 상한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지? .....	56
Q104. 교육과정 개발 용역비와 강연료를 각각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	56
Q105. 기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	57
Q106. 주차권 제공(2만원 상당)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	57
Q107. 당구, 스크린 골프(2만원 상당)은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 .....	57
Q108.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	62
Q109. 기업도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는지? .....	62
Q110. 사보를 발간해 언론사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이 지켜야할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하는지? .....	62
Q111.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63
Q112. 벌금·과태료 산정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64

Q113. 상대방이 직무관련 공무원임을 모르고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처벌대상인지? .....	64
Q114. 금품제공과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은? .....	64
Q115.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을 함께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	64
Q116. 회사 내부결재를 통해 제공한 선물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은? .....	65
Q117. 교수등에게 지급한 강연료가 기준에 위반된 경우 처벌은? .....	65
Q118. 기업 임원으로서 공무수행사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양벌규정 대상 기관은? ...	66
Q119. 임직원 상호 연락없이 각각 10만원씩 부조금을 낸 경우, 직원과 법인의 처벌은?.....	66
Q120. CEO가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면책가능성은? .....	66
Q121. 양벌규정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인은 어느 수준의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는지? .....	67
Q122. 직원이 처벌 또는 과태료에 불복할 경우 불복 절차는? .....	68
Q123. 기업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불복 절차는? .....	68
Q124.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69
Q125. 9월 28일이 시행일인데 금년도 회계연도 적용 기준은? .....	69
Q126. 올해의 경우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69

#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

**발행일** 2016년 9월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제 작** 김영란법 상담센터

Tel. 1600-1572 | <http://allthatbiz.korcham.net>

## 자 문

법무법인 광장 유휘운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염동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채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박은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홍경호 변호사